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6월 4일, 임종득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3.9.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4.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종득의원)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가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기피 등의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려는 것임.
-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방위사업청은 2020년 3월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고 접수 시 정보수사기관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2024.6)까지 4년간 방위산업 관련 자료유출은 34건에 달하고 있음.
- 방산기술 유출 방지 필요성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을 위한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와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처벌 요건 강화 추가 검토

- 개정안에서는 반환 거부 등의 금지 요건으로 ①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②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반환이나 삭제 요구, ③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 ④반환이나 삭제 등 거부 또는 기피, 사본 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가 반환 요구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등을 거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어려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대한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개정안의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요건을 추가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

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처벌 수위 적정성 추가

- 개정안에서는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일형으로 처벌하고,¹⁾ 현행 임의적 병과인 ‘20억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에 있어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과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의 선택형 없이 단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처벌은 아닌지,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에서의 처벌 수위 등과 비교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가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 요구를 받

1)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을 경우 이를 거부·기피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시 처벌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